

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신고인	성 명	생년월일	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
법인	명 칭		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
신고 내용	상 호		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	목 적			
	제 조 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	제 조 제 품 [] 모의총포 [] 발사장치		제 품 종 류	
	월 생산 예정량		종업원 수	작업개시일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등 제조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경찰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설계도면 3. 위해예방계획서 4.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·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
유의사항

1.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대표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모의총포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(이하 "모의총포"라 합니다)를 말하며, 발사장치란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(이하 "발사장치"라 합니다)를 말합니다.
3.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제조시설의 구조·설비 및 위치
 - 나. 제조방법
 - 다.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종류와 사용방법·성능 및 특징
 - 라.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보관 또는 저장 방법
 - 마.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
 - 바. 자본금

처리절차

